

인천지방법원 2020. 7. 16 선고 2020가단8264 판결 [전세보증금반환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0. 7. 9.

판결 선고 2020. 7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65,000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(다만, '채권자'는 '원고'로, '채무자'는 '피고'로 본다)

2. 공시송달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홍다선

별지